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19일, 서명옥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2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4. 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9. 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9.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명옥 의원)

현행법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사업장 폐쇄명령이나 사업의 정지 및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미신고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상품이 온라인플랫폼에서 중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등”이라 함)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의뢰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에게 대한 처벌 규정과 사업장 폐쇄명령 등을 신설하고, 통신판매중개자등에 대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신고사항을 확인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농어촌 관광객들의 주요 숙박시설로 자리 잡은 농어촌민박의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5 신설, 제89조, 제89조의2 신설, 제130조 및 제13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현행법에 따른 적용을 받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현행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해당 신고가 수리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지역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볼 수 있음.

현재 이러한 경우에는 미신고숙박업으로 보아 「공중위생법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일부 시설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폐쇄를 명하거나, 같은 조 제20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유사 업종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을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역시 같은 취지에서 별도의 행정제재처분이나 벌칙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공중위생법관리법」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거나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